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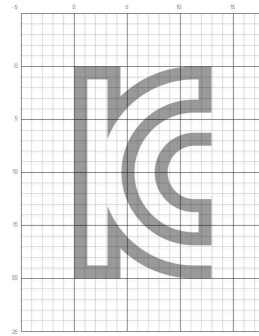
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5]

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및 면제의 표시

(제17조제2항, 제24조제1항, 제33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)

1.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

가. 도안



부품안전인증번호:
승강기안전인증번호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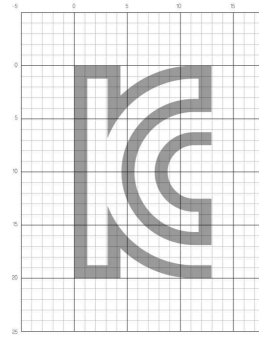
※ 도안 크기 및 색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국가표준기본법」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.

나. 표시방법

- 1)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도안은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크기에 따라 각각 조정하되 가로, 세로 비율은 가목에 따른다.
- 2)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으면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 또는 해당 승강기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,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.
- 3)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,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또는 승강기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등은 한글로 표기해야 하며, 로마자 등의 글자로 부기할 수 있다.
- 4) 승강기안전부품의 표면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또는 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최소포장마다 표시할 수 있다.
- 5)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의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.

2. 부품안전인증 면제 또는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의 표시

가. 도안



안전인증 면제확인

나. 표시방법

- 1) 부품안전인증 면제 또는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의 표시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에 해야 한다.
- 2)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품안전인증 면제 또는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의 표시를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작성하고, 관련 서류에 면제확인증을 부착하여 보관해야 한다.